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2/ 18 통권 170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 예방 및 적극 대응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꿈수에는 적극 대응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 증여세가 더욱 공정해 집니다
-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시로 막는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영업양도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승계되면 근로관계종료 아님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불가피한 2주택 비과세>

개념구분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적용방법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상부터는 장기소득공제 후 과세, 1세대 2주택부터는 과세(주택+입주권·분양권도 과세)
1주택의 요건	1세대가 2년 이상(비거주자의 거주전환시 3년) 보유 + 2년 이상 거주, 민간임대주택 등은 5년
12억원 초과분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율 40%(10년 이상))×12억 초과분 양도가비율(= $\frac{\text{양도가} - 12\text{억}}{\text{양도가}}$)
불가피 2주택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는 1세대 2주택도 비과세함
이사목적 3년내	주거 이전 목적으로 1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상속받은 1주택	상속으로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기간 무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는 과세
노부모 봉양합가	1주택자가 노부모 봉양 위해 합가 2주택인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혼인으로 합가	1주택자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보유	25년까지 농어촌주택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고향주택	1주택 보유자가 인구 20만 이하 고향에 추가 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동일·연접지 제외)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6호 / 주간 51호

2024. 12. 18.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불가피한 2주택 비과세	표지
CEO의 경영산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법인간 대여시 이자비용 관련 문의	4
	- 원천징수세율 문의	5
	-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 지입차 유류비 정산	
눈에 맞는 절세미인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8
	-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목별 추진 방향	9
직장인 Survival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④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법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491, 2024.06.27)	11
	-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741, 2023.12.27)	12
세정뉴스와 해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영업양도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승계되면 근로관계종료 아님	12
세무정보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4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필수에는 적극 대응	21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34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41
	-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시로 막는다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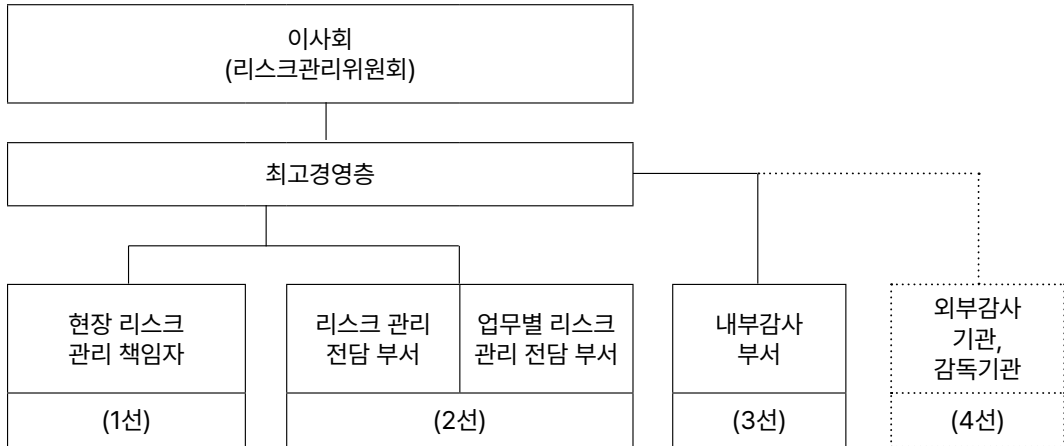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 또는 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크 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이 3선 방어(3 lines of defense) 개념이다. 3선 방어(3 lines of defense) 개념이란 쉽게 말해 리스크가 현재화되어 조직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3중으로 방어선을 치는 것을 뜻한다.

<그림 1-1> 3선 방어개념에 의한 리스크 관리 조직



●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The First Line)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그 책임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을 다루는 직원은 현금 취급 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리스크의 책임자가 되며 만일 이 현금과부족이 발생하면 이는 1차적으로 그 직원의 책임이 된다.

● 2차 방어선

2차 방어선(The Second Line)은 조직 내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팀) 또는 전담직원과 특정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총괄담당자를 의미한다.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대규모 조직에서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의 직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실무총괄,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및 경영층 보고, 리스크 인식, 평가업무 총괄, 전사적 리스크 프로파일 작성, 핵심 리스크 선정 및 모니터링 총괄, 리스크 관리 제도와 관련한 조사 및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이다.

업무별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은 개별 조직별로 다양하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IT업무이다. IT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또 모든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IT부서에서 조직 전체의 IT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3차 방어선

3차 방어선(The Third Line)은 내부감사부서가 된다. 감사부서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후 방어선으로서 1차 방어선 및 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활동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4차 방어선

4차 방어선(The Fourth Line)에 해당하는 리스크 관리 조직으로 정부, 감독기관 및 외부 회계감사 등이 있다. 이들은 조직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2015년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금융기관의 4차 방어선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이사회와 경영층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방향(the tone of the top)은 조직의 리스크 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격적 경영자는 리스크 수용도가 높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사회와 경영자의 경영전략은 리스크 관리 방향과 일관성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각 조직은 산업의 성격과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하여 리스크 성향(risk appetite)을 파악하여 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기관의 엄정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 농협 및 신협, 제약회사, 병원,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법인간 대여시 이자비용 관련 문의

Q A법인→B법인으로 대여시, 이자를 매달 지급하지않고, 최종상환일자에 일시지급할 경우 세무상 리스크가 있을지, 만약 있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자금대여계약서에 자금 상환시점에 이자를 일시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세무상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자금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세무당국에서 사실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세율 문의

Q 아래 각 상황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문의드립니다

1. 일반 법인A(대부업 및 금융기관 아님)가 그룹B(개인/법인/사모펀드)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
 2. A가 온투업자C의 개인신용대출 복수채권에 투자
 3. 온투업자C → A에게 원리금 상환시 이자소득세 (15.4%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4. A일반 법인이 그룹B에게 대여금 상환
 -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 27.5%
 - 법인(대부업 아님): 27.5%
 -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27.5 % / 법인격이 아닐 경우 15.4%
 5. 그룹B의 구성원이 연간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일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 개인 : 2천만원 초과시 종소세 신고 대상
 - 법인: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
 - 사모펀드: 법인일 경우 법인세 신고 / 법인일 경우 투자자에게 귀속 (즉, 법인이 아닐 경우 3번 15.4% 로 원천징수 종결)
- 위에 기재한 원천징수세율이 맞는지와, 이 외 추가로 세금납부 대상이 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위 1~4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상기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율은 타당합니다.
 2. 각각의 거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Q 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귀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되므로, 귀원이 판단하기에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지입차 유류비 정산

Q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래에 와서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자의나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퇴직체감 시기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 졌다고 하니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현실속에선 멀어져간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의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중의 하나는 창업을 해야 하는 시기와 창업에 따른 세금절약방법이다.

창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자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잘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은 전년의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만 앓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인테리어, 기자재 등)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창업을 하기에는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연말과 연초중 언제 개업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소득세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사업소득지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장부가 아닌 정부에서 정해주는 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원칙이 바로 경비율제도 중 단순경비율적용이다.

단순경비율이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일정정도의 율을 매출액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용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개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 사업이 잘돼서 많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경우라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사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내면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보통 단순경비율은 기장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넉넉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한 연도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을 가급적 키울수록 절약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11월이나 12월 등 연말에 창업해 1~2달의 적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1월에 창업해 12달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창업연도에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외).

창업한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실제 사업실행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즉, 연중에 창업한 경우라도) 연으로 환산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액으로 판정하게 되므로 창업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되는데, 5년내 공제가능한 상태에서 첫연도가 일부 몇 달만으로 책정되므로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왕에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연초를 선택해 하는 것이 좋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이면 30만원 → 35만원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 추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영유아 의료비용 공제	만 6세 이하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공제	200만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자료 : 국세청

화

불투명해진 주요 경제 정책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 그린벨트 해제
밸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류업 법인세 5% 세액공제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 반도체 특별법 제정 • '대왕고래' 시추 사업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개혁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목별 추진 방향

● 상속세

-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확대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 기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과세율 폐지(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 가상화폐 과세

내년 1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

● 혼인특별세액공제

부부에게 각자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방안



금 투자 방법과 특징

상품	판매처	수수료	세금
골드바	은행, 한국조폐공사, 귀금속 매장, 편의점, 온라인 등	5%	부가가치세 10%
KRX 금시장	증권사	0.3%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금통장	은행	1-5%	배당소득세 15.4%
금 펀드	자산운용사	운용보수 1%	배당소득세 15.4%
금 ETF	상품을 증권사, 은행 통해 가입	운용보수 0.3-0.5%	국내 : 배당소득세 15.4% 해외 : 양도소득세 22%



상대의 성격에 따른 설득법 6가지 ⑥

6. 리더십이 있는 사람

- 여러 명이 함께 설득한다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맡거나 조정자 역을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설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 리처드 크러치필드는 "리더십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경우가 적어진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은 그를 따르는 무리가 하나가 되어 설득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명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영업양도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승계되면 근로관계종료 아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03, 2023.12.19

질 의

- 질의인은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2.9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질의인은 '23.4월 위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양수도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킴

질의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킨 경우에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

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491, 2024.06.27

질 의

-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방법
- (갑설)자본거래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을설)손익거래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 신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국민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741, 2023.12.27

■ 질 의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신고시에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에 대한 합산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산 확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이 제외된 세법개정안이 1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박찬대 의원 외 169인 의안번호 2203522)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소소위에서 박수영 조세소위원회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 간에 최종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불가, 현행 유지'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납세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목 당 연간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에 대한 공제한도도 개인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전자신고를 담당하고 있고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1만6천 세무사들의 허탈감과 실망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 규모를 개정해 부가세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50%씩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박수영 조세소위원회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는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시행령으로 축소 개정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2013년에 이어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시도는 최종 무산되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대안에 추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가 어렵게 되자 공제 규모 축소까지 시도했지만 세무사회는 물론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일부터 121만 가구에 5789억원 지급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일부터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121만 가구,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지급되며, 이번 지급분은 2024년 상반기 귀속분이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30만 가구로, 심사 과정에서 9만 가구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할 수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세청, 2024. 12

국회는 '24.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24.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원안 가결 (10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 수정 가결 (2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부결 (1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 (현행)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⑥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부가가치세법

- 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 ②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 ③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④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 정규직외 근로자 인건비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 1년 이상 기간제 + 월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 (기본공제)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원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규모(단위:만원, %)</th> </tr> <tr>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계속고용</td> <td>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td> <td>2,200</td> <td>2,400</td> <td>1,200</td> <td>400</td> </tr> <tr> <td>그 외 계속고용</td> <td>1,300</td> <td>1,500</td> <td>7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단위: 만원)</th>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경단녀 등</td> <td>1,450 (3년)</td> <td>1,550 (3년)</td> <td>800 (3년)</td> <td>400 (2년)</td> </tr>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850 (3년)</td> <td>950 (3년)</td> <td>450 (3년)</td> <td>-</td> </tr> </tbody> </table>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경단녀 등	1,450 (3년)	1,550 (3년)	800 (3년)	400 (2년)	그 외 상시근로자	850 (3년)	950 (3년)	450 (3년)	-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경단녀 등	1,450 (3년)	1,550 (3년)	800 (3년)	400 (2년)																																														
그 외 상시근로자	850 (3년)	950 (3년)	450 (3년)	-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2">탄력고용</td> <td>인건비 증가율 3% ~ 20%</td> <td>증가분의 20%</td> <td>증가분의 10%</td> <td colspan="2" rowspan="2">-</td> </tr> <tr> <td>인건비 증가율 20% 이상</td> <td>20% 초과 증가분의 40%</td> <td>20% 초과 증가분의 20%</td> </tr> </tbody> </table>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 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공제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정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 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 (사후관리 폐지) ○ 최소 고용증가 기준 신설 :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②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①·§30①)

*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① (성별) 남성 포함 ② (업종) 동일 업종 취업 폐지 ③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육아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보양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현행 제도(경력단절여성) ○ (성별) 여성 ○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 게 일시납입 가능 ○ (비과세한도*)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 (납입한도) 총 1억원(연 2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②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조특법 §91의18, §12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삭 제

④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의3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예 :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 (요건) ①, ② 모두 충족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②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한) '27.12.31.	<input type="checkbox"/> 삭 제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조특법 §100의3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①, ② 모두 충족) -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②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text{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text{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8.12.31.	<input type="checkbox"/> 삭 제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대상 축소 <input type="checkbox"/>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 양도소득세 유지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2만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⑥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조특법 §104의1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input type="checkbox"/>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을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7년 이후 1.0%)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현행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div>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 국세청, 2024. 12

- ① 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
 - ② 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개편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과다공제 사례

-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 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①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가장 빈번한 사례)

- (사례 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②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 (사례 ③)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000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 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 (사례 ④) 근로자 B와 사업자인 배우자 C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 B는 연말정산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사업자 C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었습니다.

③ 그 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잦은 실수 사례

- (중복공제) 근로자 C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망자 공제) 근로자 C는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 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여 '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 (월세 과다공제) 근로자 A는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공제를 받았다가 지적되었습니다.
- (친인척 허위공제) 근로자 A는 부양가족이 아닌 조카 B를 법정 기본공제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Ⅰ 주요 과다공제 유형 Ⅰ

주요 항목	과다공제 유형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세연도 말(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5.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예시) |

2024년 귀속 소득초과 부양가족 내역(소득발생 : 2024년 1월~6월)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초과
배우자	이세정	820505-2*****	Y

-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김직원은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음

○ 국세청은 3.10.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여,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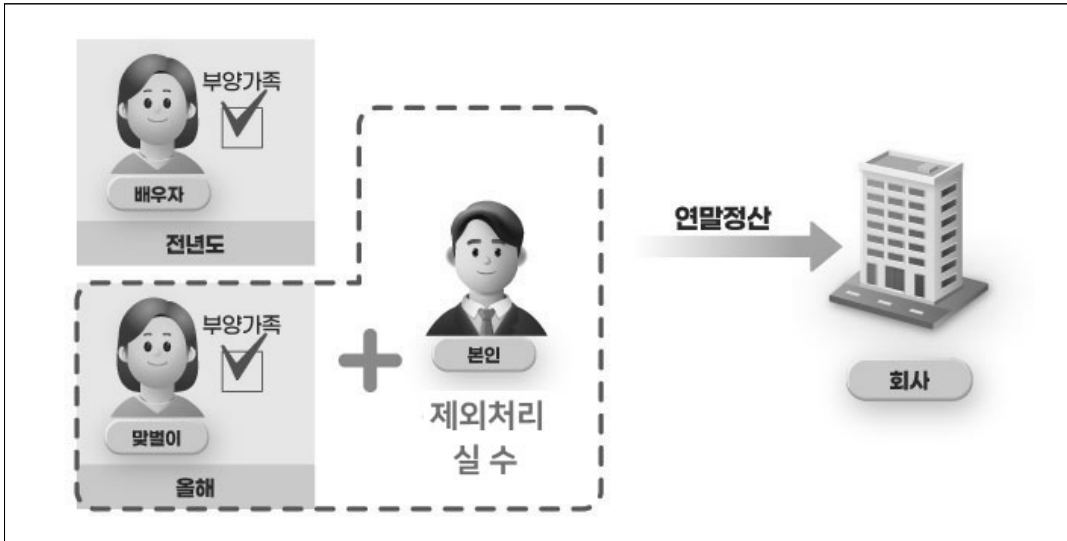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

②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 사실 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음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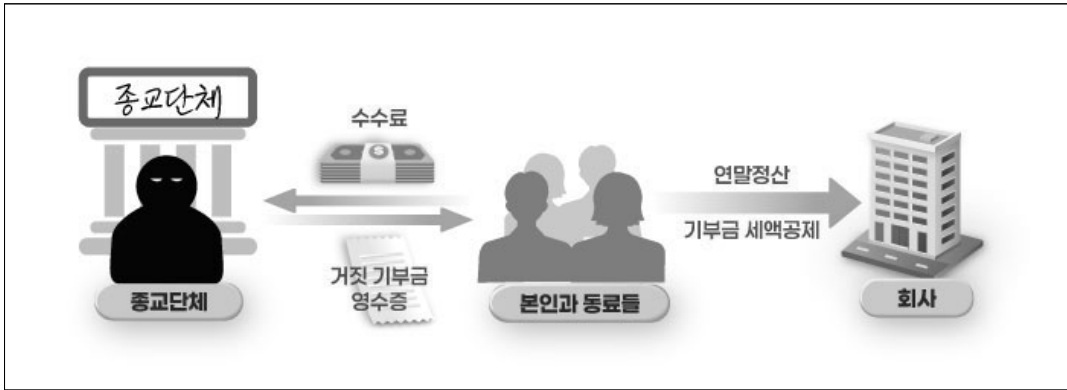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

㉓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음
-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 00명이 '18년부터 '23년까지 총 000억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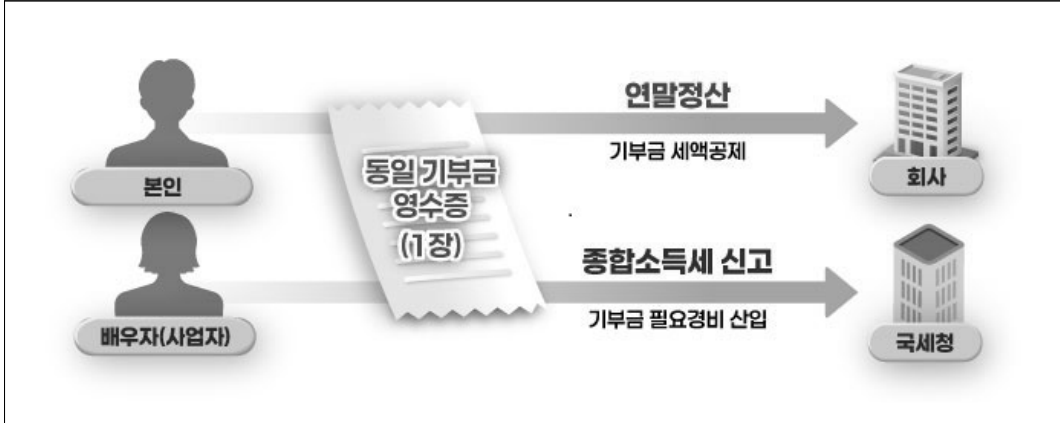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박허위와 동료들 00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음
-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0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0억원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였음
 -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과다공제 사례

④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 사실 관계

-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4.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음
-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
-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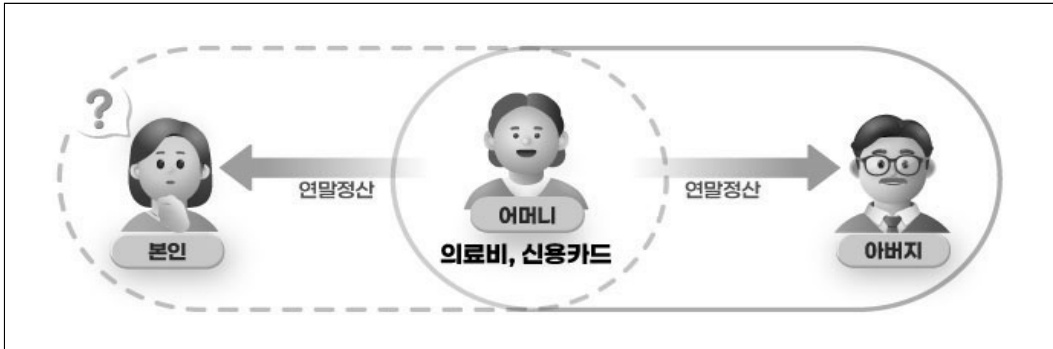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함

과다공제 사례

⑤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 사실 관계

-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음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하였음
 -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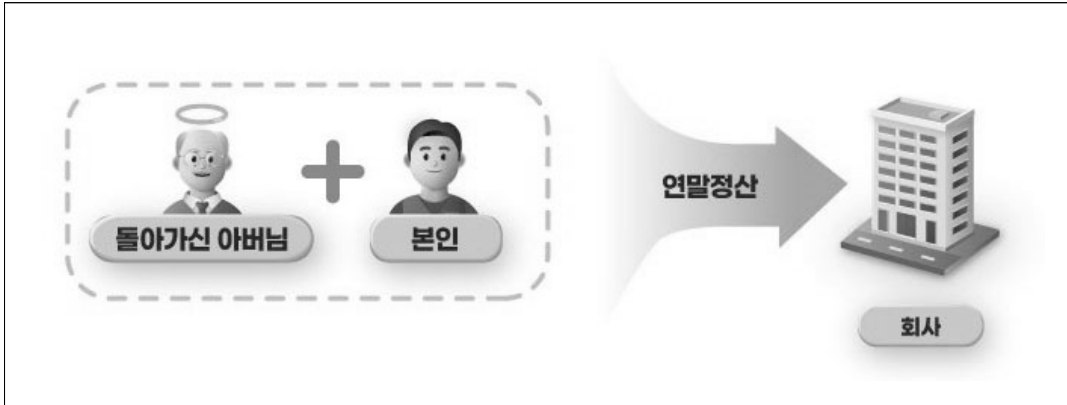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

⑥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22.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음
-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23.1.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 신고를 안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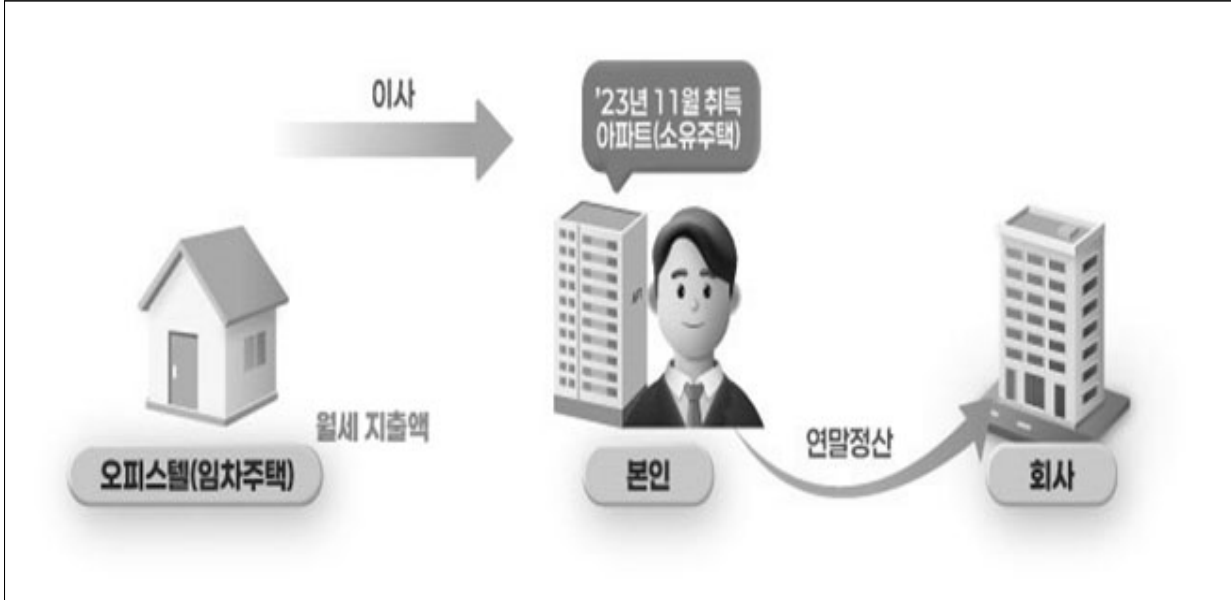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아버지 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과다공제 사례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 사실 관계

○ 근로자 이주택은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3.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음

○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 월세 지출액 330만원(30만원×11개월) × 17% = 56만원

과다공제 사례

③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 사실 관계

○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¹⁾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²⁾’라고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음

1)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불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

○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

□ 처리 결과

○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참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 ('24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① 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② 과세연도 말(12. 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을(삼촌·고모·이모·조카 등) 부양가족으로 공제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12. 31.)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①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②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각각 세액공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 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 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 국세청, 2024. 1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하였습니다.

□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 올해는 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음식점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하였습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

반자로 공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24년 공개대상
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15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2*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7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1
합 계	25개

* 요건①,②가 중복인 경우 요건②에 기재

-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 → (’16.7.1.~’16.12.31.) 3억 원 → (’17.1.1. 이후) 2억 원

□ 국세청은 ’23. 1. 1.부터 ’23. 12. 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41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포탈세액 합계(41명) : 약 1,330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231억 원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입니다.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81백만 원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자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부정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입니다.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개정 ('22.1.1. 시행)

-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입니다.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 ** 제8조의2: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은 '23. 1. 1.부터 '23. 12. 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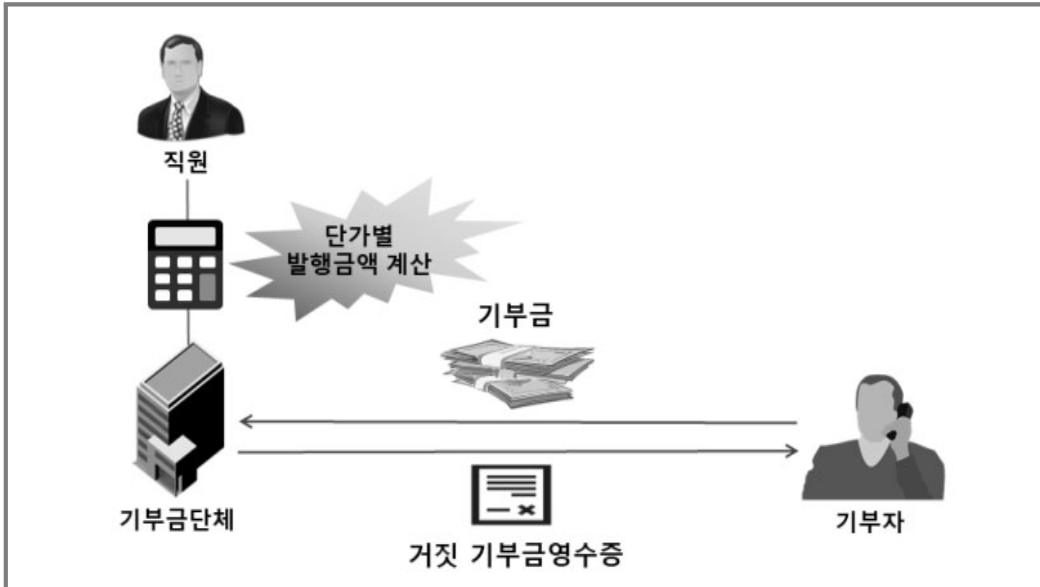
-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납세자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고액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통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 실제 수령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



□ 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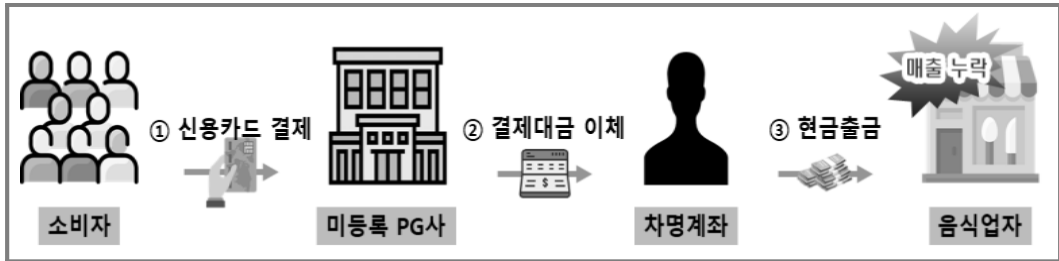
-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조사 의뢰
- □□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00백만 원 추징이 예상됨

붙임 2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하여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하고,
-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을 포탈



□ 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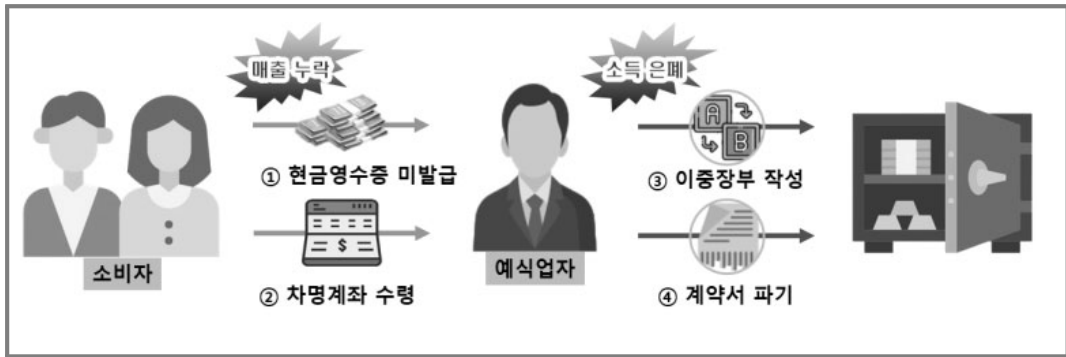
-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2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000백만 원을 포탈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함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사하여,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국세청, 2024. 12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 '24년 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파트	전용면적	추정시가(①)	공시가격(②)	비율(②/①)
나인원한남	273㎡	220억	86억	39.1%
아크로리버파크	235㎡	180억	75억	41.7%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	145억	59억	40.7%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재지	전용면적	추정시가(①)	공시가격(②)	비율(②/①)
강남 신사동	599㎡	180억	76억	42%
용산 한남동	1,257㎡	163억	68억	
강남 청담동	653㎡	130억	55억	

-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분	초고가 아파트	중형 아파트	
아파트	타워팰리스(도곡)	트리마제(성수)	래미안퍼스티지(반포)
전용면적	223.6㎡	84㎡	84㎡
기준시가	37억	25억	25억
시가	70억(추정)	40억	43억
증여세	13.7억	15.2억	16.7억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

정입니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¹⁾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²⁾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 1)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 2) [(추정 시가 - 신고가액) / 추정 시가]
 -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행정예고
 -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 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내부 3명·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 ①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②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 ※ ①,②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국제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6일 (금)	12월 9일 (월)	12월 10일 (화)	12월 11일 (수)	12월 12일 (목)
미 달 러 (USD)	1414.90	1419.40	1433.20	1428.10	1431.40
일 본 엔 (JPY)	942.48	947.06	947.35	940.07	939.12
영 국 파 운 드 (GBP)	1805.20	1809.45	1827.04	1824.25	1825.04
캐 나 다 달 러 (CAD)	1008.91	1002.44	1011.18	1007.37	1011.05
홍 콩 달 러 (HKD)	181.82	182.43	184.35	183.69	184.10
위 안 화 (CNH)	194.41	195.28	196.88	196.80	197.43
유 로 화 (EUR)	1497.60	1499.95	1512.67	1503.79	1502.68
호 주 달 러 (AUD)	912.96	908.42	922.77	911.13	912.30
싱 가 폴 달 러 (SGD)	1056.96	1058.38	1069.35	1064.44	1064.7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9.57	321.17	323.89	322.52	322.90

과세정보 노리는 해킹공격, 이제 AI로 막는다

- 국세청, 2024. 12

1 AI의 역습이 시작된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후 IT(정보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지능화되는 해킹공격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습니다.
- 그러나,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업무효율 향상 등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한편, 해킹도구로의 악용 가능성도 열었습니다.
 - 챗GPT는 해킹 방법 등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해킹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킹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해커에게는 위협적인 '사이버 무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AI 해킹공격 AI로 방어

-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그간의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AI기반으로 전환하여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은 AI로' 막는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이버 보안관제는 보안위협 탐지, 분석, 대응, 전파 등 4단계를 거칩니다.

- 기존에는 해킹시도가 탐지되면 관제요원이 IP, 인터넷 주소(URL), 공격코드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해킹 위험도가 높은 보안위협부터 처리하다 보니, 위험도가 낮은 보안위협을 대처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 이에 반해, AI는 동시 수만 건의 해킹 시도를 1초 이내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대량의 공격시도가 발생해도 모든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격 차단과 상황전파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Ⅰ AI 사이버 보안관제 도입 후 변화 Ⅰ

구 분		기존 보안관제	AI 보안관제
위협 분석	동시 대응	1건(관제요원 1명당)	수만 건(AI)
	분석 시간	건당 5분 이상	건당 1초 이내
보안 조치	해킹공격 차단	수동	자동
	보안위협 전파	수동 (관제요원이 피해 사용자에게 전화, 메신저로 안내)	자동 (AI가 피해 사용자 PC화면에 알림창으로 안내)

- AI 보안관제 시스템에는 실제 해킹에 사용된 공격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공격 유형별* 자동대응 절차를 만들었으며, 지난 10월 개통 이후 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습니다.

*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 시도, 비인가 접근시도, 홈페이지 변조 등

- 안정화 기간 동안 관제요원 10명의 몫을 톡톡히 해내며, 일일 평균 수백여 건의 보안위협을 정확히 분석하고 차단하여 한 건의 해킹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운영과정에서 과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AI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에 새로운 해킹 공격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학습하여 분석 정확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3 과학세정, AI로 견인

-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국세행정에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AI 기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은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과학세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보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술 도입, 보안시스템 확충 및 국세행정에 최적화된 보안정책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1. AI 사이버 보안관제 흐름도

